#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72 발의연월일: 2025. 3. 31.

발 의 자:신장식・김재원・황운하

이해민 · 김선민 · 차규근

박은정ㆍ서왕진ㆍ강경숙

김준형 · 정춘생 · 백선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선출한 후에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하고 있는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의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재판관이 공석이 되어 헌법재판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

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면서 선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하여, 헌법재판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확보하여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6조제6항 신설 및 제7조제3항).

법률 제 호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를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여야 하며, 선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② (생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	③		
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		
<u>지</u>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월 전까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		
	하여야 하며, 임기만료일 또는		
	<u> 정년도래일까지</u>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⑥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여야 하		
	며, 선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		
	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u>것으로 본다.</u>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② (생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		
	<u>한다.</u>		